

CISG하에서 물품의 일치성과 제3자 클레임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심 중 석**

목 차

I. 머리말	III. 제3자 클레임
II. 물품의 일치성	IV. 맺음말

(논문투고일 : 2014.2.13. / 논문심사일 : 2014.4.7. / 게재확정일 : 2014.4.25.)

I. 머리말

본고 제출시점 기준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의 계약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79개국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지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CISG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한 가장 성공한 선도적 입법례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지하듯 CISG는 다양한 법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법리상의 공통분모를 도출하여 성안된 입법성과로서 그 지위에 걸맞게 국제상거래에 임하고 있거나 임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에게 널리 수용되어 그 법적 지위를 가일층 견고히 확립하고 있는 차제에 있다.

CISG는 ‘국제성’(internationality) 충족을 요건으로(제1편) ‘매매계약의 성립’(formation of the contract of sale, 제2편)과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eller and the buyer, 제3편)만을 규율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제3편 제2장 매도인의 의무가운데 제2절 ‘물품의 일치성’(conformity of goods)과 ‘제3자 클

* 본 논문은 2013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교수, 법학박사·경영학박사

레이임’(third party claims)에 관한 규정(제35조~제44조)을 연구범위로 두고 이들 조문에 관한 법적 기준과 효과 및 개별규정이 적용된 판결례로부터 법적 유의점과 시사점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범위에 속한 이들 10개 조문은 CISG가 적용되어 발생한 분쟁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¹⁾ 이는 당해 조문에 대한 특단의 이해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본고의 연구범위에 기하여 그간 다종의 선행연구가 집적된 결과 또한 이 같은 시사점이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²⁾

본고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이들 조문에 관한 법적 기준과 효과를 명료히 하고 나아가 당해 규정이 적용된 판결례를 통해 실무적용상 고려해야 할 유의점과 시사점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그 결과로서 실무계를 향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말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에 비추어 부각할 수 있는 본고의 차별성은 당해 조문의 규정해석에 관한 법적 기준에 판결례로부터의 평가를 결부하여 그 확장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는 이들 규정 내지 규정체계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표창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결과로서, 이로부터 보다 심도 있는 후속연구의 파급효를 기대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총 10개 조문을 물품의 일치성에 관한 규정(제35조~제40조)과 제3자 클레임에 관한 규정(제41조~제44조)으로 대별하고 각각의 판결례³⁾를 해당 조문에 결부하는 체계로 전개하고자 한다.

1) 井原 宏, 「判例 ウィーソ賣買條約」, 東信堂, 2010, p.211.

2) 오원석·민주희,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적합성에 관한 비교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오원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계약적합의무”, 「무역학회지」, 제27권 제3호, 2002; 김재성·박세훈,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포장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4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 심종석, “국제통일계약법규범하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비교 연구”, 「국제상학」, 제20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5; 이우영·이양기,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비교 연구”, 「국제상학」, 제24권, 2009; 강정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상의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입증책임”, 「경제법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경제법학회, 2010.

3) 본 논문에서 판결례라고 함은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합체한 의미로 새겨 둔다.

II. 물품의 일치성

1. 적용상의 기본원칙

(1) 기본원칙

제35조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품의 종류·수량·품질 및 포장 등이 계약에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기준과 이에 연관된 매도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품이 동조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당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불일치한 물품의 가치와 용도가 계약내용에 비추어 특정된 물품과 동일할 경우 그 불일치한 물품의 인도는 계약위반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매도인의 의무위반이 매수인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substantially to deprive)할 정도의 손해를 야기한 ‘중대한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에 해당하는 경우(제25조) 매수인은 제49조(매수인의 계약해제권) (1)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⁴⁾ 제35조 (1)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물품의 규격·품질·수량·포장 등은 계약내용과 다름없이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계약에서 물품에 대해 어떠한 수량·품질·규격 또는 특정방식의 포장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통상의 규칙에 따라 양 당사자가 그들 계약에서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조항은 물품의 일치성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합의한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주관적 일치성’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⁵⁾

동조 (2)는 물품의 품질·용도 및 포장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기준은 강제성은 없으나 통상 계약내용의 일부분으로 취급되고 있음이 상례이다. 곧 이들 기준은 계약당사자 간 물품의 특성에 관한 특단의

4) 新堀 聰, 「ウィーン賣買條約と貿易契約」, 同文館出版, 2009, pp.57-70.

5) Stefan Kröll, et al.,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C. H. Beck, 2011, p.499.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을 구속할 수 있는 묵시적 약관으로 취급되고 있음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이 계약에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를 계약내용에 편입해 두어야 한다. 환언하면 계약당사자가 동조항의 적용을 배제 또는 감퇴시켜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는 동조항의 기준에 다름없이 구속된다.⁶⁾ 동조 (2)는 (1)에 더하여 물품의 일치성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객관적 합의 또한 병합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⁷⁾

동조 (2)는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2개 부분[(a), (b)]은 계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고 있지 않는 한, 모든 계약에 적용될 수 있고 나머지 2개 부분[(c), (d)]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각각의 기준들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합된 규정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물품의 일치성 관한 각각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그 물품은 계약에 불일치한 것으로 취급된다.

동조항 (a)에 비추어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은 반드시 동일한 명세의 물품으로서 ‘통상의 사용목적’(ordinary be used)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통상의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완벽한 물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b)에서는 물품은 계약체결 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매도인에게 알려진 특정한 목적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b)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특정한 목적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력과 판단력을 신뢰하지 않았거나, 이를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b)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조항 (c)에 의하면 물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한 물품의 견본 또는 모형과 다름없이 일치하여야 한다. 곧 양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바가 없음을 조건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견본 또는 물품의 모형을 제공한 경우 (c)가 적용된다. 나아가 (d)에서는 물품이 계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법으로 담기거나 포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6) Schlechtriem, P.,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 Oxford Univ. Press, 1998, pp.275-288.

7) Stefan Kröll, *et al.*, *op. cit.*

동조 (3)에 의하면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에 물품의 불일치를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던 경우 매도인은 동조 (2)에 따라 물품의 불일치로 인한 일련의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물품에 분명한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여전히 당해 물품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상태, 곧 물품에 분명한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 인수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⁸⁾

동조는 불일치한 물품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루지 않고 있는 까닭에, 이에 따른 특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판결례에 의하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의 불일치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는 있으나, 그 법리적 배경은 양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CISG에서는 당해 입증책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여 물품의 불일치를 주장하는 매수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데 기초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비록 CISG가 입증책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CISG는 국제적 통일법으로서 이에 상당한 일반원칙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의 불일치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주장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데 기초하고 있다.⁹⁾

생각건대 후자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CISG의 해석원칙에 관한 제7조에 기하여 마땅히 당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법계 내지 국제사법 및 CISG를 보충하고 있는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에서도 공히 수용하고 있는 법리적 형평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판결례

1) 논점과 판결요지

본건은 계약내용에 비추어 물품의 불일치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8) Seppälä, Sampsa, "The Responsibilities and Rights of Both Buyer and Seller in International Trade Concerning the Conformity of the Goods and Additional Contractual Requirements," 「<http://urn.fi/URN:NBN:fi:ula-201306041199>」 (2013. 12.12), pp.57-60.

9) Schlechtriem, *op cit.*, pp.288-289

를 다루고 있는 사례이다.¹⁰⁾ A(매도인)는 B(매수인)와 Y를 계약의 목적으로 특정하고 장기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에는 Y를 인도하기 위한 일련의 내용에 합의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Y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최종소비자가 Y를 가공처리 함에 있어 문제가 야기되어 A는 B에게 차기계약분 Y의 인수거부와 향후 본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차기 이후로의 Y의 인수 또한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그렇지만 본건 의사통지에도 불구하고 A로부터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자 B는 본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였다. 이후 A는 B가 인수하지 않은 본건 Y를 당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A는 본 계약에서 B와 그 어떠한 품질조건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기 인도된 Y는 다름없이 본건 계약에 일치한다는 사실과 또한 계약체결 시 B가 Y를 취급함에 있어 그간의 경과와는 다르게, 곧 Y를 특별한 목적으로 재가공하여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이에 그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결국 본건 다툼의 핵심은 B가 Y의 불일치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더하여 Y의 인수를 거절하고 이로부터 계약상 의무이행을 일방적으로 정지함으로써 A의 실질적 기대를 박탈하였다는 A의 주장과, 양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Y가 계약에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당초 A는 Y가 사용될 특별한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B 주장과의 대립에 있었다.

법원은 계약내용에 비추어 당사자 간 Y의 품질에 관한 약정이 부재하다고 보아 제35조 (1)은 적용할 수 없고, 나아가 계약체결 시 A가 명시적·묵시적으로 Y의 특별한 목적을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했다는 증거도

10) 「Hof S-Hertogenbosch」 (Netherlands), 『Unknown』, 2002.10.15. 이와 유사한 판결례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기술편의상 이하 본 문구는 생략한다). 「Rechtbank van Koophandel (Commercial Court)」 (Belgium), 『Unknown』, 2002; 「Cour d'Appel de Paris」 (France), 『2002/18702』, 2004; 「Supreme Court of Western Australia」 (Australia), 『FUL 169 of 2003』, 2004; 「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USA), 『00 Civ. 5189 (RCC)』, 2006.

없으므로 동조 (2)의 (b) 또한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동조항 (a)에서 규정하고 있는, 곧 ‘상당한 품질기준’(reasonable quality standard)을 적용하여 당초 당사자가 합의한 Y의 물품가격은 재매각에서 여하히 충당할 수 없었다는 사실과 그간 양당사자의 상관행에 비추어 Y가 B의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에 본건 Y는 계약에 불일치하다고 최종 판시하였다.

(2) 평가

본 사건은 계약내용에 계약목적물의 품질에 관한 약정이 없고 또한 이를 특정할 근거마저도 없는 경우 제35조 (2), (a)에 의거 양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은 대체거래에서 받을 수 없는 가격이고 인도된 물품 또한 그간 매수인에게 익숙한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건 물품은 계약에 불일치하다고 판결한 사례이다.

통상 물품의 일치성에 관한 의미가 품질에 있어서 어떠한 수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세 가지의 견해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통상의 일치성이란 평균품질 내지는 ‘중등품질’(average quality) 수준에 달해야 한다는 견해이고, 두 번째는 ‘상업품질’(merchantable quality) 수준에 이르면 족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예컨대 매도인이 Y라는 물품을 매도한 경우 Y의 중급속 허용기준이 1이고 상업적으로 판매가능한 기준이 그 보다 높은 2라고 할 때, 만약 매도인이 인도한 Y의 함량이 1.5라고 가정하면, 매도인이 인도한 Y는 첫 번째 중등품질에는 이르지 못하게 되어 계약에 불일치하게 되지만, 두 번째 견해에 의할 경우 상업품질 기준은 충족하게 되어 계약에 일치하게 된다.¹¹⁾

세 번째 견해는 ‘상당한 품질기준’(reasonable quality standard)에 이르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CISG 제7조 (2)에 따라 계약에의 일치성 기준을 합리성(reasonableness)의 충족여부에 두고 있다.¹²⁾

11) 「Federal Supreme Court (Bundesgerichtshof)」 (Germany), VIII ZR 159/94, 1995.

12) CISG가 기초하고 있는 합리성(reasonableness)에 관한 법리 내지 법적 기준 등에 관한 성격은 다음의 견해를 참조할 수 있다. 이는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Schlechtriem P., *Uniform Sales Law : The UN Convention*

생각건대 CISG의 국제적 성격과 적용상의 통일성 증진의 시각에서 세 번째의 견해가 일견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서든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양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경우 다양한 판결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건의 핵심은 ‘사실의 문제’(the matter of facts)로 귀결된다고 보아 물품의 일치성에 관한 당사자의 명시적인 합의는 제35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통상의 사용목적에의 일치성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제35조 (2), (a)의 의미에 대하여 본건 판결에서와 같이 영미법계의 ‘상품성 기준’(merchantability test)이나 대륙법계의 ‘평균품질원칙’(average quality rule)을 배척하고 ‘상당한 품질기준’(reasonable quality standard)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판례와,¹³⁾ 달리 영미법계의 ‘상품성 기준’이나 대륙법계의 ‘평균품질원칙’ 중에서 전자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한 판례,¹⁴⁾ 그리고 물품이 평균품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조항의 요건을 충족하고는 있지만 상품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취한 판례도 있다.¹⁵⁾

2. 물품의 손상과 일치성에 미치는 효과

(1) 물품의 손상에 따른 법적기준

제36조는 물품의 불일치와 관하여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 불일치가 어느 시점에 존재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이 경우 동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위험의 이전 시에 있었던 물품의 불일치에 관하여 매도인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Vienna Manz, 1986, n.41; Bonell M. J., *Article 7 : Interpretation, Gap-filling*, in *Bianca-Bonell Commentary*, Milan Giuffrè, 1987, pp.81-82; Honnold, J. 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r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p.101.

13) 「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 (Netherlands), 『2319』, 2002.

14) 「Oberlandesgericht Frankfurt am Main」 (Germany), 『13 U 51/93』, 1994.

15) 「Landgericht Berlin」 (Germany), 『52 S 247/94』, 1994.

아울러 매도인은 위험의 이전 이후에 발생한 물품의 불일치에 관해서도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명시하고도 있는데, 이는 물품의 불일치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기인한 경우와 물품을 보증하고 있는 경우로 대별된다.

동조 (1)에 의하면 양당사자의 권리는 항상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시점에서 당해 불일치의 존재여부에 따라 이전된다. 이 경우 어느 당사자가 불일치의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관한 사안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본 사안은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라 지정된 국내법에 의해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계약의 해석원칙에 관한 제7조 (2)에 기하여 물품의 불일치를 주장하는 일방당사자, 곧 매수인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양분되어 있다. 생각건대 이는 앞선 제35조의 입증책임에 관한 문제와 다름이 없고 그 결과 또한 매한가지로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동조 (2)에서는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후에 발생하는 불일치에 관해서도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불일치는 매도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야만 한다. 곧 동조항에 따라 당해 불일치가 매도인이 일정기간 동안 그 물품의 통상적인 목적 또는 그 어떠한 특정의 목적 또는 그 어떠한 특정의 품질이나 특질을 유지할 것이라는 보증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매도인은 위험이전 이후에 발생하는 불일치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¹⁶⁾

여기서 위험이전 시와 이전 후의 물품불일치에 대해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자의 경우 매도인은 위험의 이전 시에 존재하는 물품의 불일치에 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물품의 불일치를 매도인이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관련이 없으며, 아울러 그러한 물품의 불일치가 위험의 이전 이후에 명확하게 된 경우에도 위험의 이전 시에 이미 물품의 불일치가 존재하였던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위험이전의 시기는 우선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달리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조항부계약과 위험의 이전에 관한 제67조 및 그 밖의 위험에 관한 제69조의 적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6) Lookofsky, J., *Understanding the CISG*, 3rd ed., Wolters Kluwer, 2008, pp.83-91.

후자는 동조 (1)의 예외로서 위험이전 이후에 발생한 물품의 불일치에 관하여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물품의 불일치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기인한 경우로서, 이를테면 매도인이 포장을 부실하게 하여 운송 중에 당해 물품이 손상된 경우, 매도인이 당해 물품에 관한 보증특성을 위반하여 물품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당해 물품에 관한 보증은 명시적 보증은 물론 묵시적 보증으로도 가능하다.

(2) 판결례

1) 논점과 판결요지

본 사건은 위험이전 이후 물품의 불일치를 다루고 있는 사례이다.¹⁷⁾ B(매수인)는 A(매도인)와 물품 Y 및 Y의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계약에는 Y가 설치된 이후 30일 이내 B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해 기간이 경과된 이후 B는 물품대금지급을 거절하고 본건 Y에 결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B는 Y의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비용 및 자신의 기업이미지에 미친 손해에 대하여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에서 A는 B가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다. B는 본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하였다.

상소법원은 본건 계약을 Y의 매매와 그 설치를 포함하는 혼합계약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본 계약에서 Y의 매매가 주요 부분이며 Y의 설치에 대한 서비스는 이에 부수하는 일부분임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제36조에 따라 A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Y의 위험이 B에게 이전된 이후에 발생한 불일치에 관하여 A는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렇지만 B는 Y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B가 제기한 소송은 동조 (2) 및 매수인의 구제권에 관한 제45조에 따라 물품대금지급을 피하기 위한 의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Y가 당초 B의 기대에 일치한 것으로 최종 판시하였다.

17) 「Audiencia Provincial de Barcelona」 (Spain), 『Unknown』, 1998.05.26.

법원은 본 판결의 근거로서 계약체결 이후 B는 A에게 자신의 대리인에게 Y의 선적 전에 Y의 시운전을 요구하였고 A는 B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여 시운전에 임했다고 하는 전문가의 증언을 제시하면서 본건 B의 상소를 기각하였다.

2) 평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도인은 위험의 이전 시에 물품에 내재하고 있는 불일치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손해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매도인의 의도는 여하히 관계가 없다.

또한 위험의 이전 이후의 경우에도 만약 물품의 불일치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기인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다름없이 매도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본 사건은 이 같은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 전형적인 판결례로 취급할 수 있다.

3. 인도기일 전의 추완권과 물품검사시기

(1) 인도기일 전의 추완권

제37조는 매도인이 계약에 규정된 기일 이전에 불일치한 물품을 인도한 경우를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동조 제1문의 내용에 비추어 매도인은 물품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당해 수량을 인도하여 물품의 부족을 보충하여야 하며, 만약 인도된 물품의 품질에 결함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대체 물품을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 중에 계약에 불일치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동조 제2문에서 매수인은 반드시 동조 제1문에 따라 매도인이 이행한 구제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본건 청구에 구애됨이 없이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동조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인도기일 이전에 물품을 인도하였어야 하며 또한 당해 물품의 인도가 ‘불완전’해야 한다. 여기서 ‘불완전’이라고 함은 ‘물

품의 하자’뿐만 아니라 ‘권리의 하자’ 또한 포함한다.

매도인에 의한 추완은 통상적으로, 누락분의 인도, 부족분의 보충, 대체물품의 인도, 불일치의 제거 등이 있다. 이 경우 추완에 따른 수단 내지 방법의 선택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그러나 당해 추완이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매도인은 여하한의 추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한 매수인은 이 같은 매도인의 추완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다.¹⁸⁾

그렇지만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매도인의 추완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하자에 기한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매도인의 추완에도 불구하고 이행기 전에 매도인의 중대한 위반이 명백한 경우 매수인은 이행기 전의 계약해제에 관한 제72조 (1)에 의거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2) 물품의 검사시기

제38조는 물품에 관한 매수인의 검사의무를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동조에서 매수인의 검사의무는 독립적이고도 고유한 의무가 아니라 이하 제39조 부적합의 통지에 관한 규정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제한규정이라 할 수 있다. 즉 매수인이 만약 사전에 물품검사를 하였더라면 발견했을 불일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하지 않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통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물품의 불일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물품을 검사하지 않고 불일치한 사항을 통지했을 경우 당해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결국 매수인의 검사의무에 대해 매도인은 검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또한 매수인이 검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하여 별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한편 매수인의 물품검사기간은 그 상황에서 실제로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짧은 기간’이라고 함은 당해 상황에서 실제로 실행가능한 기간이라는 사실이 적의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서 물품검사는 제39조의 불일치 통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기간은

18) Honnold, J. O., *op. cit.*, pp.245-247.

흔히 불일치의 통지기간과 함께 고려되는 것이 상례이다.

소위 송부매매 시의 검사와 관련하여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있다면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장된다. 이 경우 “운송을 포함한다”는 것은 물품인도장소에 관한 제31조 (a)에서와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송부매매 시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최초운송인’(first carrier)에게 인도하는 때에 종료되지만 매수인의 검사의무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연장된다.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할 합리적인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물품운송 중에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그 밖의 다른 곳으로 재차 운송되는 경우 물품 검사는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장된다. 이 경우 전제조건은 그러한 변경 또는 재운송의 사실을 계약체결 시에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야만 한다.

(3) 판결례

1) 논점과 판결요지

본 사건은 매수인이 위험이전 시기에 물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에 의한 물품대금의 지급거절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루고 있는 사례이다.¹⁹⁾ B(매수인)는 Y(축산물)를 계약의 목적물로 A(매도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에는 수량, 물품대금 및 지급기한, 물품의 설명, 집하일, 장소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A의 원료구입처에서는 Y를 단위상자에 적입하고 급속냉동 후 야외냉동고에서 출하하기까지 보관하였다. A는 당해 상거래의 어느 시점에서도 Y를 보관하는 일은 없었다. 원료구입처는 자사냉동고 외에 다른 2개사의 냉동고에 Y를 보관하였고 자사의 품질관리기록에 따르면 Y는 적정온도

19) 「Oberster Gerichtshof」 (Austria), 『7Ob301/01t』, 2002.01.14; 「Hof van Beroep, Gent」 (Belgium), 『Unknown』, 2003.05.12; 「Oberlandesgericht Köln」 (Germany), 『16U62/07』, 2008.05.19; 「Tribunale di Forlì」 (Italy), 『2280/2007』, 2008.12.11; 「Tribunal Supremo」 (Spain), 『133/2008』, 2008.01.17; 「Handelsgericht Zürich」 (Switzerland), 『HG 930634』, 1998.11.30; 「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USA), 『09 Civ. 3059 (TPG)』, 2010.03.30.

에서 보관되어 특정한 업무기준에 따라 처리·보관되고 있었다. 소송에서 제시된 기록에 의하면 외부 1개사의 위탁보관 중에 Y는 허용온도 또는 그 이하에서 보관되고 있었지만 다른 1개 회사는 당사자로부터 그 어떠한 증거제시가 없었다.

C(운송회사)는 B의 대리인으로서 물품을 구입처로부터 집하하였고 화물수령 시 C는 선하증권에 서명하고 Y가 ‘in apparent good order’(외형은 양호)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곧 당해 선하증권은 ‘포장내용물의 내용과 상태는 불명’(contents and condition of contents of packages were unknown)이라는 소위 ‘부지약관’(unknown clause)이 첨부되었다.

이후 C는 물품을 B의 고객에게 인도했다. 이후 B의 고객은 선하증권에 서명하면서 외형은 양호한 상태임을 인정하였다. 이후 물품대금의 지급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B는 A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B가 화물을 보관처로부터 정상상태로 수령하고 있어 A는 본 계약에 따라 B를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을 요구하였다. 본 사안에서 B의 고객은 당시 B는 당해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음을 증언하였다.

B의 고객은 Y의 가공에 임하면서 규격 외의 품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검사관이 Y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Y가 품질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B의 고객에게 Y의 가공처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관계기관에 의해 환수된다는 꼬리표에 ‘황색·녹색·온도취급불량·열화’라고 부기하고 B의 고객 냉동고에 보관시켰다. 당시 양당사자는 Y에 잠재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검사관은 그 후 현장검사를 계속하였고 이후 당해 결과에 대한 이상이나 편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문제의 단위상자의 검사 당시 보관방법은 제각각이었고 개별적으로 냉동된 것은 문제가 없었지만 집하되어 냉동된 것은 부패되어 있었다. 사료로서 재이용하려고 가공중인 Y는 이미 부패되어 있었다. 검사관은 Y가 B의 고객에게 부패한 상태로 도착한 것은 다수의 공급원이 조달한 것을 집하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이에 재이용은 불가하다고 최종 판단하였다.

법원은 B에게 물품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한 원심을 지지하면서 항소인 B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판결하였다. 아울러 법원은 CISG

하에서는 계약상 보증위반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물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Y의 불일치가 위험이전 시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묵시적인 Y의 보증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을 주장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보증의무 위반사실을 이유로 물품대금지급유보를 행할 수 없다고 최종 판시하였다.

(2) 평가

본 사건은 CISG하에서 물품검사와 위험이전의 시기에 관한 기준이 핵심사항이라고 본다. 본건 소송의 쟁점인 물품검사의 의무와 묵시적 물품의 일치성 위반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계약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법원이 제38조를 적용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본건 판결에서 물품의 불일치에 관한 보증위반의 주장이 외견상 입증책임을 소재와 그 이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본 판결은 매수인의 물품검사시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편 본 사건에서의 시사점으로서 매수인은 물품검사를 가능한 최대한 기간 내에 행하여야 하고[제38조 (1)], 물품불일치의 결정시점은 위험이전 시이며[제69조(그 밖의 위험) 및 제36조(물품의 손상과 일치성에 미치는 효과)], 검사결과 물품의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 이것이 실질적 기대가 박탈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아닌 한[제25조(중대한 계약위반)], 물품의 불일치를 발견하거나 발견해야 할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²⁰⁾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법적구제는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제39조(부적합의 통지) (1)], 그리고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의무에 대해서도 검사완료[제58조(대금지급시기)]와 중대한 계약위반이 없는 한, 면책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제49조

20) CISG상의 ‘reasonable’이라는 용어는 대개 ‘합리적’으로 번역되고 있음이 상례이나 여기서는 ‘기간’과 ‘기한’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 특별히 ‘상당한’으로 구별하고자 한다. 구분의 실익은 ‘용태’ 또는 ‘상태’ 등에 관련된 ‘합리적’이라고 하는 사실은 보통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판정부의 판정 시 ‘사실의 문제’(the matter of facts)로 귀결되는 것이 상례이고, 이에 반하여 ‘상당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반 법규범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명시적인 제한요건으로서 특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4. 불일치의 통지와 매도인의 악의

(1) 불일치의 통지

제39조는 매수인의 불일치 통지의무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동조의 내용상 매수인이 발견할 수 있는 물품의 불일치는 ‘상당한 기간’ 내에, 물품의 불일치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을 수령한 후 2년 내에 물품의 불일치에 관한 통지가 없으면 매수인은 당해 불일치에 기한 여하의 권리를 상실한다. 동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요컨대 동조는 매수인이 일정기간 내에 물품의 불일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와 관련한 제반 권리를 상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CISG에서는 소멸시효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매수인 권리의 소멸시효는 국제사법이 지정하는 국내법에 의하게 된다.

매수인은 물품의 불일치를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불일치한 사항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않으면, 이후로 물품의 불일치에 기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물품의 불일치는 앞선 제35조에 따라 ‘물품 그 자체의 하자’뿐만 아니라 ‘포장의 부적합’, ‘수량의 미달’, ‘상이한 물품의 인도’ 등이 해당될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불일치 유형과 그 종류에 상관없이 매도인에게 반드시 당해 불일치를 통지해야 한다.

물품의 불일치에 관한 통지기간은 물품검사에 의해 불일치한 사항이 발견된 때 또는 발견될 수 있었던 때로부터 기산된다.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은 사실의 문제로 귀결되겠지만 때로는 물품의 특성이 당해 ‘상당한 기간’을 추론함에 있어 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불일치에 관한 통지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또한 그 불일치의 유형 내지 종류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불일치 통지는 서면·구두 여하를 불문하고 불요식에 기하나, 다만 그 효력은 발송과 동시에 발

생한다. 이 경우 통지는 매도인 또는 매도인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테면 단순한 대리인이나 중개인, 그 밖의 제3자에게 보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다른 한편 불일치 통지가 없는 경우, 곧 매수인이 불일치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통지를 했어도 상당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였거나,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한 경우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은 물품의 불일치에 관한 제반 권리를 상실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수량이 부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물품대금은 계약내용에 준하여 다름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물품의 수량초과분을 인수한 경우에도 그 초과분에 대한 물품대금은 다름없이 지급되어야 한다.²¹⁾

불일치 통지의 하자에 기한 매수인의 권리상실과 관련하여, 당해 불일치에 대해 매도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개입된 경우와 매수인이 통지를 하지 못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설령 불일치 통지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의 모든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즉 물품불일치에 대해 매도인이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불일치 통지의무의 위반을 주장할 수 없고 또한 매수인이 물품의 불일치 통지를 하지 못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²²⁾

매수인의 물품검사에 의해 물품의 불일치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물품이 매수인에게 사실상 인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불일치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상실한다. 다만 계약상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기간에 의한다. 이 경우 2년은 제척기간을 의미하며 기산점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실제로 인도된 때부터이다. 여기서 2년의 제척기간은 매도인이 물품의 불일치를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되지만, 매수인이 불일치 통지를 하

21) Anderson, C. B., "Article 39 of the CISG and Its 'Noble Month' for Notice Giving; A Gracefully Ageing Doctrine?", *Journal of Law & Commerce*, University of Pittsburgh, 2012, pp.14-16.

22) Nwafor, N. A., "Analysis of Buyer's Obligations under Articles 38 and 39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SRN 2194101*, 2012, 「<http://dx.doi.org/10.2139/ssrn.2194101>」 (2013.12.12).

지 못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제척기간이 다름없이 적용된다.

(2) 매도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

제40조는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불일치의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38조와 제39조의 예외규정으로써 기능한다. 곧 매도인이 물품의 불일치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물품의 불일치를 통지하지 않아 자신의 제반 권리를 상실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여기서 매도인의 악의는 물품인도 시가 기준이 되며, 이 경우 ‘모를 수 없었을 경우’라고 함은 통상의 ‘중과실’에 준한 모든 경우로 취급된다.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인은 일반적인 불일치 통지뿐만 아니라 2년의 제척기간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3) 판결례

1) 논점과 판결요지

본 사건은 계약상 매수인의 통지기한을 초과하였다는 매도인의 항변이 매도인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 부정될 수 있는 여지를 다루고 있는 사례이다.²³⁾ A(매도인)와 B(매수인)은 Y를 계약의 목적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본건 Y는 수차례 분할인도 형태로 FOB 조건하에서 ‘수출사양의 포장’(export standard packing)으로 출하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있었다.

최초 2회분은 C에게 전매된 후 다시 최종고객인 D에게 재전매되었다. 이후 D는 물품의 품질에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 최초 인도분을 제외하고 Y의 인수를 거절하였다. B는 물품이 계약에 불일치하다는 통지를 A에게 발송하였으나, A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통지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B는 계약내용의 중재조항에 따라 중

23) 「Cour d'Appel de Paris」(France), 『03/21335』, 2005.02.25; 「ICC Court of Arbitration, Paris」(France), 『11333』, 2002; 「Hof van Beroep, Antwerpen」(Belgium), 『1995/AR/1558』, 1998.11.04; 「Rechtbank Arnhem」(Netherlands), 『172920/HA ZA 08-1228』, 2009.02.11.

재를 신청하였다.

중재판정부는 A에 대하여 B가 본건 물품불일치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금과 그 이자의 지급을 명하였다. 곧 중재판정부는 B의 주장과 같이 A가 제38조 내지 제39조의 적용이 배제된 계약상 검사의무와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B가 물품수령 이후 국제적으로 저명한 회사의 전문적 의견을 첨부하여 물품불일치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을 공히 인정하였다.

나아가 중재판정부는 A의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한 항변권 행사를 포기했다는 B의 주장에 관하여 이러한 권리포기에 관해서는 계약당사자의 명확한 합의에 따라 행해져야 하나 본건에서는 당해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 본건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동시에 A가 본건 통지를 수령한 후에 B에게 당해 물품의 하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실을 참조할 때, ‘금반언(*estoppel*)의 법리’에 따라 A에게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한 항변권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CISG상 ‘금반언의 법리’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해석원칙에 관한 제7조 (2), 청약의 취소에 관한 제16조 (2)의 (b), 계약의 변경과 서면요건에 관한 제29조 (2)에 비추어 소위 “본인의 과거행위에 반하는 일은 해서는 아니 된다”(venire contra fatum proprium)는 법언을 추보하였다.

2) 평가

본건은 법원이 아닌 중재판정부에 의한 판정사안이지만 그 적용법리가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는 판결례로 취급할 수 있다. 상대방의 통지에 대해 이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권리포기’(waiver)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는 영미법의 법리로서 소위 금반언의 원칙이 관계됨을 의미하는데 본건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불일치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등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통지의무 불이행의 항변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매수인으로 하여금 충분히 믿게 할 만한 행동을 한 상황으로부터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에게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한 항변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것이다. 따라서

본 판정은 영미법이 적용되는 법역 이외에서의 재판에서도 금반언의 원칙에 기하여 단지 이전의 행동이나 발언을 위배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책사유가 발생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본다.

Ⅲ. 제3자 클레임

1. 물품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제3자 클레임

(1) 물품에 대한 제3자 클레임

제41조에 따라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동조는 제3자로부터 그 어떠한 권리 또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곧 매도인의 책임을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동조의 취지는 매수인이 그러한 권리 또는 클레임에서 벗어나 그 어떠한 제한 없이 물품의 점유권과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기 위한 것에 두고 있다. 적용사항과 비적용사항에 관한 제4조 (b)에 비추어 계약이 물품의 소유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이를 CISG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지만 동조에서는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에 구속되지 않도록 그 명확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를 CISG 적용범위 내에 일정부분 수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동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마땅히 계약위반으로 취급된다. 동조 제1문은 이 같은 매도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곧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물품은 반드시 제3자가 당해 물품에 관하여 그 어떠한 권리 또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이 결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인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사유가 조각된다.

동조 제2문에는 산업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 등에 기초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과 그 밖에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을 구분하고 있다. 요컨대 후자는 본조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고, 전자는 이하 지적재산권 등에 기초한 제3자의 클레임에 관한 제42조에 의해 규율된다.²⁴⁾

(2) 지적재산권 등에 기초한 제3자 클레임

제42조는 매도인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또는 클레임이 없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매도인이 동조를 위반하여 물품을 인도하게 되는 경우 계약위반으로 취급된다. 여기서 지적재산권이란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등을 포함하며, 제41조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제3자의 정당한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부당한 지적재산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²⁵⁾

매도인은 동조에 따라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의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함에 있어 세 가지의 제한을 수반한다. 그 내용은 차례로,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은 계약체결 시에 매도인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는 권리 또는 클레임으로서 매도인은 이에 상당한 의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이 동조 (1)의 (a) 또는 (b)에 따라 적용되는 국내법에 의할 경우에 한하여 그 의무를 부담하며, 만약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이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에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권리 또는 클레임인 경우 그러한 권리 또는 클레임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공한 기술규격에 기인한 경우 매도인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술규격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설계도·디자인·사양서·시방서·방식 등이 있다고 본다.

(3) 판결례

1) 논점과 판결요지

본 사건은 매수인의 악의에 기한 제3자의 지적소유권 침해를 다루고 있는 사례이다.²⁶⁾ A(매도인)는 B(매수인)에게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Y를 인도하였다. 제3자로서 C(지적소유권자)는 B를 상대로 자국에서 본건 Y

24) Illescas, O. R. · Viscasillas, P. P., "The Scope of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B2B, Goods, Digital Content and Services,"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2012, pp.241-258.

25) Flechtner, H. M., et al., *Drafting Contracts Under the CISG*, Oxford Univ. Press, 2008, pp.376-378.

26) 「Cour de Cassation」 (France), 「526 FP」, 2002.03.19.

의 유통에 따른 배상금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이에 B는 A에게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건 Y의 유통에 따른 C에게의 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을 보전하고자 이를 A에게 청구하였다.

법원은 유통업자로서 B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당초 A가 인도한 Y가 위조된 것인지 모를 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곧 법원은 B가 본건 Y의 유통에 기하여 C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제42조 (2)의 (a)에 의거, 본 사안이 계약체결 시 B가 이러한 권리 또는 클레임을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동조항이 A가 그 어떠한 지적소유권도 없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마저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이에 후보하였다.

2) 평가

본건은 매수인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당초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모를 수 없었고 보아 이를 매수인의 악의로 인정하고 그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본건 판결주문은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에 이러한 권리 또는 클레임을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가 없었던 경우 매도인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제42조 (2)의 규정이 적용된 전형적 판결례로 볼 수 있다.

2. 제3자 클레임에 관한 통지

(1) 제3자 클레임에 관한 통지의 법적 기준과 효과

제43조는 제39조와 마찬가지로 물품의 권리상 제3자의 클레임과 연관된 하자에 대한 매수인의 통지의무를 다루고 있음과 동시에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이 매수인의 통지의무 불이행 및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또한 매도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 및 그 내용에 대해 악의인 경우 매수인의 통지의무 불이행을 매도인이 주장할 수 없다는 동조 (1)에 대한 예외를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동조는 물품의 불일치에 관한 제40조에 대응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동조는 제39조 물품의 불일치에 대한 통지규정과는 달리, 검사의무 및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매수인이 제3자 클레임과 연관된 하자통지를 하지 않아도 매도인이 이를 원용할 수 없는 예외는 매도인이 그 하자를 당초부터 알고 있었던 때에 한 한다.

하자통지의무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과 연관된 권리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그 권리의 하자를 매도인에게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기산점은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이다. 또한 매수인은 제3자의 클레임과 연관된 권리하자의 내용을 매도인이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때의 통지는 발신주의에 의한다.²⁷⁾

(2) 불통지의 정당한 사유

제44조가 적용되는 경우 매수인은 제39조 (1) 또는 제43조 (1)에 규정된 통지를 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결과에 따라 물품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통상 매수인이 이러한 통지를 행하지 않게 되면 불일치한 물품 또는 제3자의 클레임으로 인해 자신이 매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구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적절한 통지를 발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대금감액에 관한 제50조에 따라 물품대금을 감액하거나 또는 이익의 손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²⁸⁾ 동조에서의 구제는 제39조 (1) 또는 제43조 (1)의 통지요구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동조는 매수인이 제39조 (2)에 정하고 있는 불일치 통지에 관한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적용이 배제된다. 곧 매수인이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에 관한 최종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통지를 하지 못한 것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

27) Schwenz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3rd ed., Oxford Univ. Press, 2010, pp.675-679.

28) Huber, P. · Mullis Alastair, *The CISG*, European Law Publishers, 2007, pp.177-178.

재하였더라도 동조에 따라 그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매수인은 동조의 적용에 따른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제39조 (1) 또는 제43조 (1)의 통지요구에 따르지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여야 한다. 결국 정당한 사유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결하고 있는 경우 동조의 적용에 따른 매수인의 주장은 배척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3) 판결례

1) 논점과 판결요지

B(매수인)는 A(매도인)로부터 Y(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였다.²⁹⁾ 당시 경찰은 본건 Y가 계약체결 전에 장물(stolen goods)로 수배되어 있던 까닭에, 계약의 이행 시에 B로부터 Y를 압류하였다. 아울러 원래 Y 소유자인 C(보험회사)는 B에게 서신으로 Y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한편 B는 Y가 장물이므로 본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A에게 계약의 목적물로서 Y에 대한 물품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렇지만 A는 이 같은 B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B는 소송을 제기하여 물품대금의 반환 및 A로부터 Y를 인수함에 있어 발생한 부대비용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하급법원에서는 B가 승소하였으나 상급법원에서는 B의 주장이 기각되었다. 상급법원의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3조 (1)에 의거 B가 상당한 기간 내에 당해 법적 결함을 A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B는 매수인 구제권 총괄에 관한 제45조의 구제권을 상실하고, 이 경우 제43조 (1)에 규정된 상당한 기간은 개별사건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B가 그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을 지정해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Y가 압류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A에게 서신으로 통지한 것은 제43조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기간을 초과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법원은 B는 당해 서신을 수령한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C의

29) 「Bundesgerichtshof」 (Germany), 『VIII ZR 268/04』, 2006.01.11.

요구를 A에게 통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C가 본건 Y에 대한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B는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3자의 권리에 대한 통지에는 반드시 누가 클레임을 제기하는지 또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통지를 통해 A는 제3자와의 협의를 통해 B에 대한 클레임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법원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경찰이 Y를 압류한 이후 B가 A에게 서신을 송부하였으나 그 서신에는 단지 경찰이 Y를 장물로 의심하여 압류하였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A가 C의 서신을 수령한 후에 B는 A에게 그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결국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고, 아울러 B가 상당한 기간 내에 A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제44조에 의거, 제43조상의 예외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B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2) 평가

CISG하에서 권리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통지는 물품에 발생한 문제를 매도인에게 조기에 정확하게 인식시켜 매도인을 포함한 계약당사자의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의의를 내재하고 있다. 나아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경감차원에서도 긴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통지의 요건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 시기는 물품의 불일치 또는 권리부적합을 발견하거나 발견해야 할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CISG에서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두고 있지만 본 사건에서와 같이 개별 또는 특정사안에 따라 그 상당한 기간의 산정은 사실의 문제로 귀결되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통지의 내용으로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의 불일치 또는 권리부적합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같은 통보의 충족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불일치 또는 권리부적합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매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아가 통지의 구체적 요건의 충족에 따른 적정성 여부는 개별판결

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역시나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통지의 형식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특정형식 외에 서면통지는 통상 합법적이고도 매우 안정적인 방법이다. 구두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지만 이는 입증책임이 부과됨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뒤따를 수도 있다. 나아가 구두에 의한 통지에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다른없이 서면에 의한 추가증거가 필요하게 될 것인 바, 이 또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IV. 맺음말

본고는 CISG 제3편, 제2장, 제2절(제35조~제44조)에서의 물품의 일치성과 제3자 클레임에 관한 규정내용을 연구범위로 두고 이들 조문에 관한 법적 기준과 효과 및 이들 규정이 적용된 판결례를 통하여 법적 유의점과 시사점을 제시한 논문이다.

본고의 결과를 규정해석에 기한 법적 유의점과 시사점 마찬가지로 판결례에 기한 법적 유의점과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자의 경우로서, 우선, 제35조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품의 종류·수량·품질·포장 등이 계약에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기준을 다루고 있으나, 그 불일치한 물품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루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특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ISG는 국제적인 통일법으로서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을 수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 경우 물품의 불일치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주장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제36조는 물품의 불일치와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그 불일치가 어느 시점에 존재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이 경우 주목하여야 할 것은 위험이전 시와 이전 후의 물품의 불일치에 관하여 매도인은 위험의 이전 시에 존재하는 불일치에 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이때 당해 불일치를 매도인이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아울러 그러한 불일치가 위험의 이

전 이후에 명확하게 된 경우에도 위험의 이전 시에 이미 그 물품의 불일치가 존재하였다면 다툼없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이 전가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또한 위험의 이전시기는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되고 당해 합의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69조가 적용된다.

셋째, 제37조는 매도인이 계약에 규정된 기일 이전에 불일치한 물품을 인도한 경우를 다루고 있는 규정으로서 동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인도기일 이전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고 또한 물품인도가 권리의 하자를 포함하여 불완전해야 한다. 이 경우 매도인의 추완권 내지 그 방법의 선택권은 매도인에게 있음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넷째, 제38조에서 매수인의 검사의무는 독립적이고도 고유한 의무가 아니라 제39조 불일치의 통지에 관한 규정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부가규정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유의하여야 할 사실은 송부매매 시의 검사와 관련하여 당해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있다면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장된다고 하는 점이다.

다섯째, 제39조에 기하여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매수인은 물품불일치에 대한 여하의 권리를 상실한다. 이 경우 계약상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에 의하고 제척기간으로서 2년의 기산점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실제로 인도된 때부터이다. 다만 2년의 제척기간은 매도인이 물품의 불일치를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예외가 인정된다.

여섯째, 제41조에 따라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고, 나아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 또는 클레임이 없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한편 매수인은 하자통지의무와 관련하여 제3자의 클레임과 연관된 권리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그러한 권리의 하자를 매도인에게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제3자의 클레임과 연관된 권리하자의 내용을 매도인이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며 이때의 통지는 발신주의 원칙에 의하게 됨은 유의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로서, 우선, 제35조에 비추어 통상의 사용목적에 관한 의미에 관하여 영미법계의 소위 상품성 기준이나 대륙법계의 평균품질원칙

을 배척하고 상당한 품질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판례와, 달리 영미법계의 상품성 기준이나 대륙법계의 평균품질원칙 중에서 전자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한 판례 및 물품이 평균품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조의 요건을 충족하나 물품이 상품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취한 판례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매도인은 위험의 이전 시에 물품에 내재하고 있는 불일치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손해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매도인의 의도는 일절 관계되지 않는다. 또한 위험의 이전 이후의 경우에도 만약 물품의 불일치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기인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다름없이 매도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셋째, 매수인은 물품검사를 가능한 최단기간 내에 행하여야 하고, 물품의 불일치에 관한 판단시점은 위험이전 시이며, 검사결과 물품의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 이것이 실질적 기대이익을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계약위반이 아닌 한 물품의 불일치를 발견하거나 발견해야 할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게 되면 이로부터의 구제수단은 용인될 수 없다. 그리고 매수인의 물품대금 지급의무에 대해서도 검사완료와 중대한 계약위반이 없는 한 면책될 수 없다.

넷째, CISG하에서의 통지는 손해경감에 그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통지시기에 관하여 CISG에서는 그 기간을 최장 2년 이내로 두고 있지만 개별 또는 특정사안에 따라 상당한 기간의 산정은 사실의 문제로 귀결되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주의가 필요하다. 통지의 내용은 불일치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통지의 충족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불일치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특단의 주의가 필요하다. 통지의 적정성 여부 또한 이와 다름이 없다. 여기서 통지의 형식은 제한이 없으나 입증책임을 고려하여 서면통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정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상의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입증책임”, 「경제법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경제법학회, 2010.

김재성·박세훈,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포장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4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

심종석, “국제통일계약법규범하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비교 연구”, 「국제상학」, 제20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5.

오원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계약적합의무”, 「무역학회지」, 제27권 제3호, 2002.

_____,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적합성에 관한 비교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이우영·이양기,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비교 연구”, 「국제상학」, 제24권, 2009.

新堀 聰, 「ウィーソ賣買條約と貿易契約」, 同文館出版, 2009.

井原 宏, 「判例 ウィーソ賣買條約」, 東信堂, 2010.

Anderson, C. B., “Article 39 of the CISG and Its ‘Noble Month’ for Notice Giving: A Gracefully Ageing Doctrine?”, *Journal of Law & Commerce*, University of Pittsburgh, 2012.

Bonell M. J., *Article 7 : Interpretation, Gap-filling*, in *Bianca-Bonell Commentary*, Milan Giuffrè, 1987.

Flechtner, H. M., *et al.*, *Drafting Contracts Under the CISG*, Oxford Univ. Press, 2008.

Honnold, J. 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r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Huber, P. · Mullis Alastair, *The CISG*, European Law Publishers, 2007.

Illescas, O. R. · Viscasillas, P. P., “The Scope of the Common European

- Sales Law: B2B, Goods, Digital Content and Services,”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2012.
- Lookofsky, J., *Understanding the CISG*, 3rd ed., Wolters Kluwer, 2008.
- Nwafor, N. A., “Analysis of Buyer’s Obligations under Articles 38 and 39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ttp://dx.doi.org/10.2139/ssrn.2194101>」, *SSRN 2194101*, 2012.
- Schlechtriem, P.,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 Oxford Univ. Press, 1998.
- _____, *Uniform Sales Law :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Vienna Manz, 1986.
- Schwenz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3rd ed., Oxford Univ. Press, 2010.
- Seppälä, Sampsa, “The Responsibilities and Rights of Both Buyer and Seller in International Trade Concerning the Conformity of the Goods and Additional Contractual Requirement”<http://urn.fi:/NBN:fi:ula-201306041199>」, 2013.
- Stefan Kröll, et al.,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C. H. Beck, 2011.
- 「Audiencia Provincial de Barcelona」(Spain), 『Unknown』, 1998.05.26.
- 「Bundesgerichtshof」(Germany), 『VIII ZR 268/04』, 2006.01.11.
- 「Cour d' Appel de Paris」(France), 『03/21335』, 2005.02.25
- 「Cour d' Appel de Paris」(France), 『2002/18702』, 2004.
- 「Cour de Cassation」(France), 『526 FP』, 2002.03.19.
- 「Federal Supreme Court (Bundesgerichtshof)」(Germany), VIII ZR 159/94, 1995.
- 「Handelsgericht Zürich」(Switzerland), 『HG 930634』, 1998.11.30.
- 「Hof S-Hertogenbosch」(Netherlands), 『Unknown』, 2002.10.15.
- 「Hof van Beroep, Antwerpen」(Belgium), 『1995/AR/1558』, 1998.11.04.
- 「Hof van Beroep, Gent」(Belgium), 『Unknown』, 2003.05.12.

- 「ICC Court of Arbitration, Paris」 (France), 『11333』, 2002.
- 「Landgericht Berlin」 (Germany), 『52 S 247/94』, 1994.
- 「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 (Netherlands), 『2319』, 2002.
- 「Oberlandesgericht Frankfurt am Main」 (Germany), 『13 U 51/93』, 1994.
- 「Oberlandesgericht Köln」 (Germany), 『16U62/07』, 2008.05.19.
- 「Oberster Gerichtshof」 (Austria), 『7Ob301/01t』, 2002.01.14.
- 「Rechtbank Arnhem」 (Netherlands), 『172920/HA ZA 08-1228』, 2009.02.11.
- 「Rechtbank van Koophandel (Commercial Court)」 (Belgium), 『Unknown』, 2002.
- 「Supreme Court of Western Australia」 (Australia), 『FUL 169 of 2003』, 2004.
- 「Tribunal Supremo」 (Spain), 『133/2008』, 2008.01.17.
- 「Tribunale di Forlì」 (Italy), 『2280/2007』, 2008.12.11.
- 「U.S. District Court of New York」 (USA), 『00 Civ. 5189 (RCC)』, 2006.
- 「U.S. District Court of New York」 (USA), 『09 Civ. 3059 (TPG)』, 2010.03.30.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for Conformity
of Goods and Third Party Claims under CISG**

Shim, Chong Seok

The Section II of Chapter II Part III the CISG contains provisions addressing some of the most important seller's obligations under a contract for sale in particular, the obligation to deliver goods that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and of the CISG in terms of quantity, quality, description and packaging(Art. 35), as well as the duty to ensure that the goods are free from third party claims to ownership rights(Art. 41) an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Art. 42). Other provisions connected to the question of conformity are included in the section, including an article governing the relation between the timing of a defect's occurrence and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y therefor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Art. 36), and a provision addressing the seller's right to cure a lack of conformity if goods are delivered before the date required for delivery. The section also includes provisions regulating the procedure that a buyer must follow in order to preserve claims that the seller has violated the obligation to deliver conforming goods or to deliver goods free from third party claims. These include a provision governing the buyer's duty to examine the goods following delivery(Art. 38) and provisions requiring the buyer to give notice of alleged violations of the seller's obligations(Art. 39 and 43 (1)), as well as provisions excusing or relaxing the consequences of a buyer's failure to give the required notice(Art. 40, 43 (2), and 44). Art. 38 and 39 have proven to be

CISG하에서 물품의 일치성과 제3자 클레임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385

among the most frequently invoked and most controversial provisions in litigation under the CISG.

Key word : CISG, Conformity of Goods, Third Party Claims, Notice, Seller's Obligations.

주제어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물품의 일치성, 제3자 클레임, 통지, 매도인의 의무.